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1나8254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손성락, 송명근

피고, 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석훈

변 론 종 결 2021. 11. 23.

판 결 선 고 2021. 12. 23.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8. 선고 2020가단5274645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과 같이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9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9,660,343원 및 그중 16,360,584원에 대하여 2021. 10. 27.부터 2021. 11. 19.까지는 연 6.8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9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9,660,343원 및 그중 16,360,584원에 대하여 2020. 9. 23.부터 2020. 10. 22.까지는 연 6%, 2020. 10. 23.부터 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보충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8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원고는 항소심에서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5. 4. B에게 서울 송파구 E빌딩 F호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5. 26.부터 2020. 5.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11. B과 사이에, B의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상환채무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D은행, 보험가입금액을 79,200,000원, 보험기간을 2018. 5. 25.부터 2020. 5. 25.까지로 정하여 보증하는 개인금융신용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B은 만약 D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D은행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원고에게 그 지급보험금을 즉시 변제하고 그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원고가 정한 연체이율과 대출약정상의 연체이율 중 적은 이율 적용)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이후로는 연 9%이다.

다. B은 2018. 5. 11.경 원고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D은행으로부터 80,000,000원을 변제기 2020. 5. 25.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담보한도액 96,000,000원으로 하는 근질권 설정계약(이하 위 근질권을 ‘이 사건 근질권’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는 2018. 5. 17.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근질권 설정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D은행은 2020. 7. 14. 원고에게 B의 대출금 상환의무가 불이행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20. 9. 22. D은행에 보험금으로 73,839,540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D은행은 2020. 9. 23.경 원고에게 이 사건 근질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이후 B는 원고에게 구상금을 일부 변제하였고, 2021. 10. 26. 기준 원고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B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19,660,343원(= 원금 16,360,584원 + 확정지연손해금 3,299,759원)이 남아있다.

바.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인 B의 요청에 따라 2019. 4.경 피고와 사이에 합의해지되었고, 피고는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B의 D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B의 채무를 변제하였고, 이 사건 근질권을 양수하였다.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질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B에 대한 변제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의 질권 실행에 따른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B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는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근질권 담보한도액 9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9,660,343원(원금 및 2021. 10. 26.까지의 확정지연손해금 합계) 및 그중 원금 16,360,584원에 대하여 2021. 10. 27.(위 확정지연손해금의 계산일 다음날)부터 2021. 11. 19.(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보충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6.81%(D은행 대출계약 연체이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20. 9. 23.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그날 이후 2021. 10. 26.까지 발생한 확정지연손해금은 청구금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중복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일부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유지될 수 없다.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 원, 판사 김유성, 판사 최은주